

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를 건

의안 번호	246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8. 2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어 202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급

나.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: 6,669천원

다. 산출기준

가)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

- 2024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 55,574,601천원 × 1.2/10,000

※ 출연비율 인하

(2020년 이전) 1만분의 1.5 ⇒ (2021년) 1만분의 1.3 ⇒ (2022년 이후) 1만분의 1.2

* 출연비율 인하 예정(1만분의 1.2→ 1만분의 1.0), 관련 법령 '25년 말 개정 예정

3. 근거법령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4. 의결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나. 출연금 및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법령

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- 나. 출연액: 6,669천원(구비)
- 다. 출연기한: 2026. 3. 31.

2. 출연근거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< 출연의 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>

- (동법 제152조 제1항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·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함
- (동법 제152조 제3항)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

3. 산출기초

- 가. 출연액: 6,669천원
- 나.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를 출연
 - 2024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55,574,601천원 × 1.2/10,000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천 원)

구 분	합 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출연금	24,084	5,662	5,731	6,410	6,281

※ 출연비율 인하 (2020년 이전) 1만분의 1.5 ⇒ (2021년) 1만분의 1.3 ⇒ (2022년 이후) 1만분의 1.2

* 법정 출연비율 인하 예정(1만분의 1.2→1만분의 1.0), 관련 법령 '25년 말 개정 예정

4. 출연대상

가. 기관명: 한국지방세연구원

- 1) 설립일자: 2011. 2. 28. (2011. 4. 10. 개원)
- 2)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
- 3) 소재지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- 4) 조직: 4실 1사업단

나.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: 붙임참조

다. 2025년 주요사업 내용

- 1)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
 - 연구과제 수행: 총 130건
 - 행정 환경·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대응 연구
 - 균형발전 정책수립과 지방정부 권한 및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연구
 - 정책방향 제시 및 주요 이슈를 다루는 간행물 발간
- 2)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추진
 - 오피스텔·건축물·기타물건(차량, 기계장비 등) 가격 조사
- 3) 지방자치단체 협력·지원 사업 추진
 - 지방세무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
: 2025년 34개 교육과정, 82회 운영, 8,790명 교육 계획 및 운영
 -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
 -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
 -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

5. 기대효과

가.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

나.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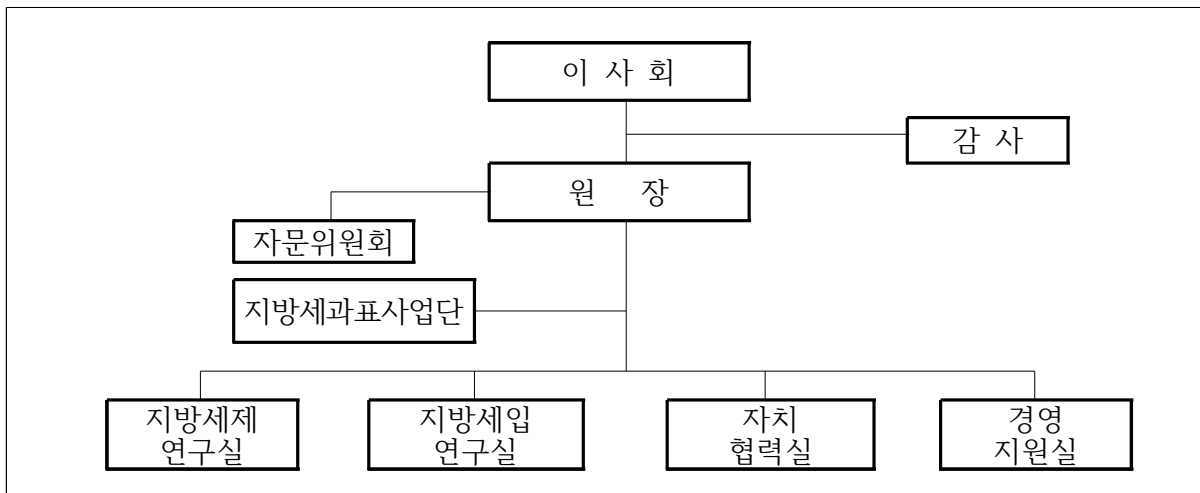
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○ 정원 78명 / 현원 64명

구 분	계	원 장	관리직	연구직	전문직	사무직 등
정 원	78명	1명	2명	50명	4명	21명
현 원	64명	1명	2명	34명	4명	23명
총인원	98명	정원의 인원 34명 (파견공무원12, 위촉연구원 및 행정원 등22)				

※ 연구직(34명) : 연구위원직 18명, 연구원직 8명, 조사분석직 8명

○ (조 직) 4실 1사업단



○ (예 산) 174.6억원 *2025년 본예산

(단위 : 억원)

수 입		지 출			
출연금	수탁 등	사업비	인건비	경상경비	시설비 등
124.1 (71%)	50.5 (29%)	92.6 (53%)	64.7 (37%)	14.6 (8%)	2.7 (2%)

※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0

· ('20 이전) 1만분의 1.5 → ('21) 1만분의 1.3 → ('22) 1만분의 1.2 → ('26) 1만분의 1.0

* 법정 출연비율 인하(1만분의 1.2→ 1만분의 1.0), 관련 법령 '25년 말 개정 예정

○ 임원 명단

구분	성명	직함	비고
이사장	정종섭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2024.2.2. ~ 2027.2.1.
부이사장	김하수	경상북도 청도군수	2025.3.13. ~ 2026.3.12.
이사	강성조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당연직
이사	김성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	당연직
이사	오준혁	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	2024.8.30. ~ 2025.8.29.
이사	이태산	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	2024.8.30. ~ 2025.8.29.
이사	조병래	경기도 자치행정국장	2024.8.30. ~ 2025.8.29.
이사	신동헌	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	2024.8.30. ~ 2025.8.29.
이사	김성수	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	2025.3.13. ~ 2026.3.12.
이사	강범석	인천광역시 서구청장	2025.3.13. ~ 2026.3.12.
이사	김성	전라남도 장흥군수	2025.3.13. ~ 2026.3.12.
이사	박관규	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	2023.8.30. ~ 2025.8.29.
감사	김정선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당연직
감사	김경태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2024.2.28. ~ 2026.2.27.

출연금 관련 법령

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